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527345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

담당변호사 박범준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24. 10. 10.

판결 선고2024. 10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16,069,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7. 6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98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강하영

별지